유언대용신탁계약서

(계좌번호:)

유언대용신탁계약서

| 위탁자 | _와 | 수탁자 | 한화투자증권 | 주식회사는 | 다음의 | 유언대용신탁계약(이하 | '본 |
|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|
|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 | | | | | | | |

제1조(신탁의 목적) 본 계약은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탁재산의 관리, 처분, 운용, 개발 등을 통해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를 위탁자가 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산을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위탁자"라 함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를 말한다.
- 2. "수탁자"라 함은 신탁을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.
- 3. "수익자"라 함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.
- 4. "원수익자"라 함은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갖는 수익자를 말한다. 다만,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서 위탁자를 원수익자로 본다.
- 5. "연속수익자"라 함은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. 다만,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수익자가 사망할 때까지 본 계약의 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- 6. "유언집행자"라 함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유언의 집행업무의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.
- 7. "사망통지인"이라 함은 <별지2>의 '사망통지인 확약서'를 제출한 자로서 수익자의 사망사실 등을 수탁자에게 통지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신탁재산) ① 위탁자가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신탁가액은 <별지1> '신탁재산 목록'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.

- 1. 금전
- 2. 증권
- 3. 금전채권
- 4. 동산
- 5. 부동산
- 6. 지상권, 전세권, 부동산임차권,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,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
- 7. 그 밖의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재산
- ② 위탁자는 제4조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 내에서 수탁자와 합의하여 신탁재산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별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

| 제4조(신탁계약기간) | 본 | 계약의 | 신탁계약기간은 | 위탁자와 | 수탁자가 | 협의하여 | 별도로 | 정한다. |
|-------------|---|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
| | | | | | | | | |

제5조(신탁계약 체결 및 효력의 우선순위)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제3조제1항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을 체결한다.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서를 교부하고 신탁관계법규에서 정한 내용 및 운용자산의 위험 고지 등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.

② 본 계약과 제1항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.

제6조(신탁관리인 지정) ① 위탁자는 수익자가 미성년자,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② 위탁자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관리인의 권한과 임무의 범위 및 보수지급에 관한사항 등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

제7조(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서비스) 위탁자는 본 계약과 별도로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서비스 제공을 수탁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.

제8조(사망통지인 지정 및 변경 등) 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사망통지인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<별지2> '사망통지인 확약서' 또는 <별지3> '사망통지인 (지정·정보) 변경 의뢰서'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망통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서 정한 사망통지인 이외에도 제3자가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는 사망통지인,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 등에게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수탁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통지의 지연 및 허위·부실 통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9조(연속수익자 지정 및 변경 등) ① 위탁자는 본 계약의 연속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. 다만, 동차에 연속수익자를 복수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 차수의 연속수익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.

| 순 서 | | 정보내용 | 위탁자와의 관 | 계 |
|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|
| | | 성 명 | | |
| | 연속수익자 | 생년월일/사업자등록번호 | 위탁자의 (|) |
| 1+1 | | 주 소/연 락 처 | | |
| 1차 | | 성 명 | | |
| | 연속수익자 | 생년월일/사업자등록번호 | 위탁자의 (|) |
| | | 주 소/연 락 처 | | |
| | | 성 명 | | |
| | 연속수익자 | 생년월일/사업자등록번호 | 위탁자의 (|) |
| 2+1 | | 주 소/연 락 처 | | |
| 2차 | | 성 명 | | |
| | 연속수익자 | 생년월일/사업자등록번호 | 위탁자의 (|) |
| | | 주 소/연 락 처 | | |
| | | 성 명 | | |
| | 연속수익자 | 생년월일/사업자등록번호 | 위탁자의 (|) |
| 3차 | | 주 소/연 락 처 | | |
| | | 성 명 | | |
| | 연속수익자 | 생년월일/사업자등록번호 | 위탁자의 (|) |
| | | 주 소/연 락 처 | | |

-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복수의 연속수익자의 경우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연속수익자에게 균등하게 지급
 - 2. 연속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
- ③ 제1항에서 정한 1차 연속수익자가 원수익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2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하고 3차 연속수익자는 2차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.
- ④ 제1항에서 정한 2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3차 연속수익자가 2차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.
- ⑤ 제1항에서 정한 3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 또는 2차 연속수익자 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위탁자 제8항에 따라 새로운 연속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3차 연속수익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.
- ⑥ 수익자 및 연속수익자가 전부 사망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최후 순서로 지정된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을 지급하기로 한다.
-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⑧ 위탁자는 제1항의 연속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<별지4> '연속수익자 (지정·정보) 변경 의뢰서'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어 상속되지

아니하고 위탁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상속인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.

제10조(신탁이익의 계산 및 지급방법) 신탁이익의 계산 및 지급방법은 제5조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11조(운용내역통보 등) ① 수탁자는 제5조의 신탁재산별 개별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내역을 통보한다.

② 수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신탁원본과 이익의 보전)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탁원본과 신탁이익의 보장 또는 손실의 보전을 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(손익의 귀속)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 및 손실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된다.

제14조(신탁재산의 표시) ① 수탁자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는 다른 신탁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신탁보수) ① 본 계약의 체결에 따른 기본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하며, 신탁재산별 신탁보수는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.

② 제1항의 신탁보수는 신탁사무 처리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16조(조세 및 비용)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및 공과금과 본 계약과 관련한 신탁사무 처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차감하거나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.

제17조(신탁계약의 중도해지 등) ① 위탁자는 본 계약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신탁재산별 신탁계약기간 만료전에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(이하 '중도해지'라 한다)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다만, 본 계약의 중도해지수수료 등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수 있다.

- ③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될 수 있다. 이 경우 신탁원본 또는 신탁이익은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에게 지급한다.
 - 1.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의하지 않으면 기초생계, 6개월 이상의 중병치료, 학업 등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
 - 2.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의해 유류분 반환이 확정되어 신탁재산으로 유류분을 지급하는 경우

- 3. 신탁관계법규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경우
- 4. 그 밖에 위탁자가 별도로 정한 경우
-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경우 해당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에게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한다. 다만, 제출한 증빙서류를 판단함에 있어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
제18조(신탁의 종료 및 최종계산)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.

- 1. 제4조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2. 본 계약에서 정한 수익자 및 연속수익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
- 3. 본 계약과 관련된 수익권 전부가 소멸한 경우
- 4. 제2호 및 제3호 이외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
- 5. 그 밖의 신탁관계법규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6.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② 본 계약 또는 제5조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재산을 교부한다. 다만, 신탁재산 중 환가 및 회수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.
- ③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, 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"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 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"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- ⑤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

제19조(수익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) 수익자는 수탁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제20조(사고신고)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, 전화, 전자우편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으로 수탁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,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지연 및 허위·부실 통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- 1. 증서(또는 통장) · 거래인감 등을 분실, 도난, 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
- 2. 위탁자, 수익자, 사망통지인 등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대한 성명, 상호, 주소지, 전화번호 등의 변경, 사망,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

제21조(인감신고) ① 위탁자, 수익자, 신탁관리인 등 그 밖의 본 계약의 이해관계자는 거래인감을 미리신고 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서류에 날인한 인영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·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 경우인감의 위조· 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22조(계약의 변경 등)

- ① 수탁자가 본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 1개월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•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된 계약의효력 발생일 전에 게시한다.
-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(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,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"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- ⑤ 수탁자는 본 계약을 수탁자의 영업점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본 계약을 확인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받을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.

제23조(추가약정 등)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의하여 추가약정 또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. 다만,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은 신탁관계법규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.

- 1. 이해관계자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
- 2.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
- ② 계약의 내용과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이 경합하는 경우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.

| (| ③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. |
|---|-----------------|
| | |
| | |
| | |
| | |

제24조(관계법규 등 준용)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관계법규 및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.

제25조(선관주의 의무)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26조(관할법원) 본 계약으로 인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27조(계약서 작성)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. 다만, 신탁재산 공시 등을 위해 유관기관에 본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경우에는 1부 이상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.

부 칙 (2018. 3. 12)

이 약관은 2018 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년 월 일

| | 성 명 | |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| 생년월일 | | |
| 위탁자(고객) | 주 소 | (서명 또는 날인) | |
| | 연락처 | | |
| | e-mail | | |
| | | | |
| | 성 명 | | |
| | 생년월일 | | |
| 원수익자 | 주 소 | (서명 또는 날인) | |
| | 연락처 | | |
| | e-mail | | |
| | | | |
| | 대표이사 | | |
| 수탁자(회사) | 사업자등록번호 | (IIII EE I IIO) | |
| | 주 소 | (서명 또는 날인) | |
| | 연락처 | | |
| | | | |

[※] 원수익자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(고객)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.

|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|--|--|
| 신탁재산· | 신탁재산목록 | | | | | | | |
| ※[]에는 해당 | 되는 곳에 v표를 협 | 합니다. | | | | | | |
| 신탁재산 | | | | | | | | |
| 1. 금전에 관한 | 사항 | | | | | | | |
| 신탁계좌번호 | 재산의 종류 | 소재지 | 수량(면적) | 단가 | 평가가액 | 평가기준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2. 증권에 관한 | • | | | | | 1 | | |
| 신탁계좌번호 | 재산의 종류 | 소재지 | 수량(면적) | 단가 | 평가가액 | 평가기준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3. 금전채권에 | 관한 사항 | | | | | | | |
| 신탁계좌번호 | 재산의 종류 | 소재지 | 수량(면적) | 단가 | 평가금액 | 평가기준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 | | |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4. 동산에 관한 | | I | | | | ı | | |
| 신탁계좌번호 | 재산의 종류 | 소재지 | 수량(면적) | 단가 | 평가가액 | 평가기준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5. 부동산 및 부 | 보동산 관련 권리(| 에 관한 사항 | <u> </u> | I | <u> </u> | 1 | | |
| 신탁계좌번호 | 재산의 종류 | 소재지 | 수량(면적) | 단가 | 평가가액 | 평가기준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한 법률에서 정하 | ト는 재산에 관한 | 사항 | | | | |
| 신탁계좌번호 | 재산의 종류 | 소재지 | 수량(면적) | 단가 | 평가가액 | 평가기준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
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탁재산을 작성하고 본 서류(1부)를 수령합니다.

년 월 일

※ 첨부서류 : 신탁재산별 증빙서류 각1부. 위탁자 (기명날인)

수익자 (기명날인)

수탁자 (날인)

| 사망통지 | 사망통지인 확약서 | | | | | | |
|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※[]에는 해당 | 되는 곳에 v표를 | 를 합니다. | | | | | |
| 사망통지대상 자 | []원수익자 []1차 연속수익자 []2차 연속수익자 []3차 연속수익자 | | | | | | |
| 1. 사망통지대성 | 상자에 관한 시 | 항 | | | | | |
| | 주 소 | | 성 명 | | | | |
| ①사망통지 | 생년월일 | | 연 락 처 | (자택/HP) | | | |
| 대상자 | 대상자구분 | □ 원수익자 □연속수익자 | 연 락 처 | (e-mail) | | | |
| | 주 소 | | 성 명 | | | | |
| ②사망통지 | 생년월일 | | 연 락 처 | (자택/HP) | | | |
| 대상자 | 대상자구분 |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| 연 락 처 | (e-mail) | | | |
| 2. 사망통지인0 | | | | 1 | | | |
| | 주 소 | | 성 명 | | | | |
| ①사망통지인 | 생년월일 | | 연 락 처 | (자택/HP) | | | |
| (본인) | 관 계 | 사망통지대상자의 () | 연 락 처 | (e-mail) | | | |
| | <u></u> 주 소 | |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| | | | |
| ②사망통지인 | 생년월일 | | 연 락 처 | (자택/HP) | | | |
| (본인) | 관계 | 사망통지대상자의 () | 연 락 처 | (e-mail) | | | |
| 3. 사망통지인의 | | | E 1.1 | (c man) | | | |
| 100 12 | 주 소 | | 우편번호 | | | | |
| 사망통지처 | 연 락 처 | | - 팩스번호 | | | | |
| 10011 | '' 담당부서 | | | | | | |
| ※ 사망통지처에 | |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하하특 | | │ 원센터(☎ 080-851-8282)로 연락주시기 | | | |
| 바랍니다. | -112 02-1 | EGE T METTO TO CAT | 100 - 111 | 2014(2 000 001 0101)± 2 [[-1] | | | |
| 4 3000000 | 기수 나는 | | | | | | |
| 4. 확약내용에 | | 느 이어대의사타게하다 사제 내다 | : 티이스크 디저 | 디어스티디 | | | |
| 제1조(사망통지인 지정) 귀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상에 사망통지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제2조(사망통지인 의무) 귀하는 상기 사망통지대상자가 사망한 즉시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| | | | | | | |
| 수탁자에게 통지하셔야 합니다. | | | | | | | |
| 제3조(사망통지인의 협력의무) 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셔야 합니다. | | | | | | | |
| 1. 사망통지인의 성명, 주소,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| | | | | | | |
| | | ·통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한 | 경우 | | | | |
| | | 망통지인이 제2조 및 제3조의 내용을 | | 거나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| | | |
| 서는 수탁자 | 의 책임 있는 |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 | 다. | | | | |
| 위와 같은 내용 | 욕으로 활약하 | 고 본 서류(1부)를 수령합니다. | | | | | |
| | J—— ¬ 191 | | 녀 워 | <u>0</u> 1 | | | |

| | ①사망통지인(본인) | (기명날인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NA 1 2 1 . UNETO NA 5 RUIZ 14 | ②사망통지인(본인) | (기명날인) |
| 첨부서류 1.: 사망통지인 신분증명서류 1부. | 수탁자 | (날인) |

| 사밍 | 사망통지인 [지정·정보] 변경 의뢰서 |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|--|
| * [] | 에는 해당되는 곳에 | v표를 합니다. | | | | | |
| | 변경사항 [] 사망통지인 지정 변경 [] 사망통지인의 정보(성명, 주소, 연락처 등) 변경 | | | | | | |
| 위탁자 | (계좌)번호 | | | | | | |
| [사망통 | 통지인에 관한 사형 | <u>}</u>] | | | | | |
| 사망통 | 지인 | 변 경 전 | | 변 경 후 | | | |
| | 성 명 | | | | | | |
| | 주 소 | | | | | | |
| 1 | 생년월일 | | | | | | |
| 0 | 연락처 | (자택/HP) (e-mail) | | (자택/HP) (e-mail) | | | |
| | 본인과의 관계 | | | | | | |
| | 성 명 | | | | | | |
| | 주 소 | | | | | | |
| 2 | 생년월일 | | | | | | |
| | 연락처 | (자택/HP) | | (자택/HP) | | | |
| | 본인과의 관계 | (e-mail) | | (e-mail) | | | |
| | | | | | | | |
| 비 고 | ㅏ유·내용 등) | | | | | | |
| 위와 |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 | |
| | | | 년 | 월 일 | | | |
| | | | 수익자(본인) | | (기명날인) | | |
| 첨부서 | 류 | | | | | | |
| | 낭통지인 신분증명 | | | | | | |
| | 2. 사망통지인 확약서* 1부. * 변경 전·후 사망통지인이 동일인인 경우 생략 수탁자 (날인)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
| 연속 | 수익자 [지 | 정·정보] 변경 의뢰 | 서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--|--|
| ※ [](| 게는 해당되는 곳에 | v표를 합니다. | | | | | | |
| 변경사 | 항 | [] 연속수익자 지정 변경 | [] 연속수 | 의자의 정보(성명, | 주소, 연락처 등) 변경 | | | |
| 고객(겨 | 좌)번호 | | | | | | | |
| [연속수 | [연속수익자에 관한 사항] | | | | | | | |
| 연속수 | 익자 | 변 경 전 | | 변 경 후 | | | | |
| | 성 명 | | | | | | | |
| | 주 소 | | | | | | | |
| 1+1 | 생년월일 | | | | | | | |
| 1차 | | (자택/HP) | | (자택/HP) | | | | |
| | 연락처 | (e-mail) | | (e-mail) | | | | |
| | 본인과의 관계 | | | | | | | |
| | 성 명 | | | | | | | |
| 2차 | 주 소 | | | | | | | |
| | 생년월일 | | | | | | | |
| 2/1 | 연락처 | (자택/HP) | | (자택/HP) | | | | |
| | 한탁시 | (e-mail) | | (e-mail) | | | | |
| | 본인과의 관계 | | | | | | | |
| | 성 명 | | | | | | | |
| | 주 소 | | | | | | | |
| 3차 | 생년월일 | | | | | | | |
| · | 연락처 | (자택/HP) | | (자택/HP) | | | | |
| | | (e-mail) | | (e-mail) | | | | |
| | 본인과의 관계 | | | | | | | |
| * 연속수 | 역자 복수 지정으로 | 로 인해 본 서식으로 작성이 어려울 | 경우 동일한 양식 | 으로 별도 작성하여 | 첨부 | | | |
| 비고 | | | | | | | | |
| (변경시 | 유 · 내용 등) | | | | | | | |
| 위와 길 | l은 내용으로 변경 | 명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| 바랍니다. | | | | | |
| | | | 년 | 월 일 | | | | |
| | | | 위탁자(본인) | | (기명날인) | | | |
| 첨부서 | 류 | | | | | | | |
| 1. 위탁자(본인) 신분증명서류 1부. | | | | | | | | |
| | 자(본인) 가족관계 | | A [LT] | | (1.501) | | | |
| * 연 | 속수익자가 법정상 | 속인인 경우에 한함 | 수탁자 | | (날인) | | | |
| | | | | | | | | |